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그 밖의 환경보전비 반영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내 용

충청남도○○○○사업소)에서는 2015. 11. 13. ○○○도 ○○시 ○○대로 000에 있는 (주)○○토건 (대표자 ○○○)와 1개사¹⁾와 국지도00호선 ○○○~○○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를 총공사부기금액 6,882,352,500원²⁾으로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11. 13. 착공하여 2018. 8. 31. 준공 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5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³⁾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

1) 충청남도 ○○군 ○○면 ○○○로 000에 있는 ○○건설(주) (대표자 ○○○)

2) 2017. 6. 19. 총공사부기금액 7,530,020,000원으로 최종 변경계약 됨

3)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 및 재활용비

3항 별표8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⁴⁾(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직접공사비에 일정 요율⁵⁾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훈련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일정요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환경보전비에서 12% 상당액을 그 밖의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충청남도(○○○○사업소)에서는 국지도00호선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의 그 밖의 환경보전비를 설계서에 계상하면서 직접공사비에 일정요율(0.9%)을 반영하여 산정한 환경보전비 58,333,334원의 12% 상당인 7,000,000원을 그 밖의 환경보전비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상하지 않고 품셈에 의해 원가 계산한 환경관리비 391,666,667원의 12% 상당인 47,000,000원으로 그 밖의 환경보전비를 잘못 계상함으로써 적정하게 계상하여야 할 그 밖의 환경보전비 7,000,000원 보다 40,000,000원 상당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는

[시정] 과다 계상된 그 밖의 환경보전비를 설계변경하여 공사비 40,000,000원 상당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4) 비산먼지방지시설(세륜시설, 살수시설, 방진망 등), 소음·진동방지시설(방진벽, 방음막, 방진고무 등), 폐기물방지시설(소각시설, 건설오니 처리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오탁방지망, 오일웬스, 이동식 간이화장실 등)

5) 토목공사(도로 0.9%, 플랜트 0.4%, 철도 1.5%, 댐 1.1% 등)